

2024년도 단체교섭 가협약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24년도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불임과 같이 합의한다.

- 불임 : 1. 2024년도 임금협약 1부
2. 노사합의서 3부

2024. 7. 23

회사측 위원

대표위원 김 영 섭

위 원 박 효 일
위 원 장 민 진
위 원 고 충 릴
위 원 이 병 무
위 원 유 용 규
위 원 오 택 균
위 원 최 호 창
위 원 장 병 관
위 원 신 영 운
간 사 이 종 원

노조측 위원

대표위원 김 인 판

위 원 정 영 미
위 원 유희수
위 원 박 병 규
위 원 전 명 군
위 원 노 성 국
위 원 김 모 상
위 원 정 차석
위 원 목 현 경
위 원 최 민 주
간 사 배 준 환

2024년도 임금협약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2024년도 임금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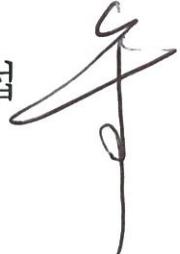
1. 임금협약

- 2024년도 기본급을 3.5% 인상한다.
- 임금인상률은 합의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하여 2024년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2024. 7. 23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김 영 섭



KT노동조합
위원장

김 인 관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AICT Company로의 전환에 뜻을 함께 하고, 혁신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직원 1인당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 지급대상 : 합의일 현재 재직자
- 지급시기 : 2024년 8월 정기 급여일

2024. 7. 23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림 

KT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회 수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종사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통한 회사의 경영성과 견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합의한다.

붙임 : 제도 개선사항 1부

2024. 7. 23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릴

KT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희 수

[붙임]

제도 개선사항

I. 인사·보수제도

1. 임금피크제 개선

- 가. 만 58세 도달 월의 기본급을 피크임금으로 하여 아래 연령에 도달하는 날의 익월부터 기본급을 조정한다.

연령	만 58세	만 59세
피크지급률 (피크임금 대비)	80%	80%

- 나. 시행일은 2025.1.1일자로 하며, 합의일 현재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고 있는 직원은 시행일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2. 초과근무수당체계 개선

- 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
상시일근자	기준연봉월정액 ÷ 209 × 1.5 × 20시간
교대근무자	기준연봉월정액 ÷ 209 × 1.5 × (15시간 + 출근일수 18일 × 1일당 1시간)

※ 휴가일수당 감액기준 폐지

- 나. 초과근무수당 월 2시간 분을 기본급화 한다.

- 다. 시행일은 2025.1.1일자로 한다.

3. Pay-Band제도 개선

가. 2024년부터 당해 연도 임금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Pay-Band 상하한을 당해 연도 1.1일자로 조정하며, 2024년에 한하여 조정된 직급별 Pay-Band 상한에 5%를 추가 상향 조정한다.

4. 인사평가제도 개선

가. 인사평가 U등급을 폐지하며, 비직책자의 인사평가 등급 분포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평가 등급	S	E	G	N
분포비율	10%	30%	50%	10%

※ 필요시 N등급은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비율은 G등급 비율에 가산

※ 인사평가 등급 분포비율 변경에 따라 인사평가 N등급 구체제도 폐지

나. 시행일은 2024년 인사평가시 부터로 한다.

5. 긴급출동보전비 신설

가. 긴급출동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7만원, 3시간 미만인 경우 4만원의 긴급출동보전비를 지급한다.

나. 시행일은 2025.1.1일자로 한다.

6. 역할급 개선

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의 역할급을 월 8.4만원으로 한다.

나. 시행일은 2025.1.1일자로 한다.

II. 복지제도 등

1. 급식보조비 지급기준 개선

가. 급식보조비의 일 지급단가를 11,000원으로 한다.

※ 출장비 식비 및 긴급출동 식비 동일 기준 적용

나. 구내식당 운영기관 지원제도를 폐지한다.

다. 시행일은 2024.10.1일자로 한다.

2. 여비제도 개선

가. 직원의 1인당 1일 숙박비 상한금액을 8만원으로 한다.

단, 서울 지역 숙박의 경우 상한금액을 10만원으로 한다.

나. 시행일은 2024.10.1일자로 한다.

3. 일체복 지급

가. 직원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일체복을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

- 단, 합의일 현재 재직자 중 지급일 이전 정년 퇴직자 대상 지급 방안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시기 등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노 사 합 의 서

주식회사 케이티와 KT노동조합은 국내 최고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 해소와 종사원의 일/가정 양립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며, 불임과 같이 제도개선에 합의한다.

불임 : 출산/육아지원 제도 개선사항 1부

2024. 7. 23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인재실장

고 충 림

KT노동조합
위원장 을 대리하여

정책실장

유 희 수

[붙임]

출산/육아지원 제도 개선사항

1. 자녀교육보조비 개선

- 가. 만 0~18세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보조비를 지원한다.

※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은 자녀교육보조비와 고교학자금 중 택일

- 나. 영유아보험 및 자녀교육프로그램 지원 제도를 폐지한다.

2. 육아휴직자 처우 개선

- 가. 육아휴직자 대상으로 정부 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 이후 무급 휴직기간 동안 매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개선

- 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적용대상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직원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최대 3년 (1년+육아휴직미사용기간^{2배가산})으로 한다.

- 나. 일 2시간 이내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기본급을 차감하지 아니하며, 2시간 초과시 비례하여 차감한다.

4. 초등자녀돌봄 휴직 제도 신설

- 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1년의 무급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5. 신생아 첫만남 대부 제도 신설

가. 신생아 첫만남 대부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신생아
자녀 1인당 1억원 한도로 신설한다.

※ 직원당 사내대부 통합한도 2억원 이내

6.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 배우자 출산시 유급휴가 20일을 부여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3회 분할) 내 사용할 수 있다.

7. 산후조리비 지원 제도 신설

가. 출산한 직원(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자녀 1인당 30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한다.

8. 1~5항의 시행일은 2025.1.1일자, 6~7항의 시행일은 2024.10.1일자로
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